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20040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박수형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1.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53355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사이에 2019.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A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10. 23. 접수 제112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B에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10. 23. 접수 제112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D과 B 사이에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 별지 4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D과 A 사이에 2019. 12. 6.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A에 특허청 2019. 12. 6. 접수 E로 마친 권리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 중 A와 B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나, 라항 기재와 같다.

3. 피고 D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11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3쪽 아래에서 7행과 그 이하의 각 “피고 A”를 모두 “A”로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7행과 그 이하의 각 “피고 B”를 모두 “B”으로 고친다.

○ 8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8. 4. 30.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를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A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의 변제자 대위 법리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므로, 위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12쪽 2~5행의 “매도인 측인 … …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실제로 2018. 4. 30.자 계약서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9. 2. 1.부터 2019. 5. 7.까지 이 사건 영월공장과 이 사건 인근 토지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BG조합 영월지점장의 의뢰로 2019. 5. 22.부터 2019. 5. 29.까지 감정평가가 실시된 뒤 2019. 6. 10.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H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매도인 측인 A, B과 매수인 측인 피고 D은 위 감정평가 금액과 대출금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 14쪽 아래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가)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14쪽 아래에서 2행의 “가)”와 15쪽 9행의 “나)”를 각 삭제한다.

○ 15쪽 아래에서 2행부터 16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1)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5다107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의 이전이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346,190,137원을 대위변제하여 A, 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채권은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변제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30. 이전에 성립되어 있던 위 대출금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 6, 1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4. 30. 당시 A, B이 채무초과상태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 D은 채무초과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A로부터 이 사건 영월공장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면서 그 주변에 위치한 B의 토지도 함께 매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D은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원고의 A,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 20쪽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B의 채무는 대부분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주채무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김선아, 판사 천지성

별지 1

목 록

1. 강원 영월군 AF 공장용지 6,684㎡
2. 강원 영월군 AG 공장용지 267㎡
3. 강원 영월군 AF, AH, AI, AJ, AK, AL, AM 제1공장
[도로명주소] 강원 영월군 F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공장 1,387.33㎡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보일러실, 물탱크실, 사무소, 기숙사
지1층 보일러실, 물탱크실 29.33㎡
1층 사무소 191.48㎡
2층 기숙사 191.48㎡
4. 강원 영월군 AF, AH, AI, AJ, AK, AL, AM 제2공장
[도로명주소] 강원 영월군 F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철골경사지붕 단층공장 456.09㎡
5. 강원 영월군 AN 임야 35,042㎡. 끝.

별지 2

목 록

1. 강원 영월군 AH 공장용지 1,309㎡
2. 강원 영월군 AI 공장용지 879㎡
3. 강원 영월군 AJ 공장용지 1,696㎡
4. 강원 영월군 AO 공장용지 417㎡
5. 강원 영월군 AL 공장용지 2,313㎡
6. 강원 영월군 AP 공장용지 579㎡
7. 강원 영월군 AQ 공장용지 460㎡
8. 강원 영월군 AR 공장용지 315㎡
9. 강원 영월군 AS 잡종지 367㎡
10. 강원 영월군 AT 전 169㎡
11. 강원 영월군 AU 잡종지 2,661㎡
12. 강원 영월군 AV 전 592㎡
13. 강원 영월군 AW 전 103㎡
14. 강원 영월군 AX 공장용지 651㎡
15. 강원 영월군 AY 전 1,251㎡
16. 강원 영월군 AZ 임야 1,190㎡. 끝.

별지 3

1. 화성시 K 입야 5748㎡
2. 화성시 L 도로 320㎡ 중 B 지분 320분의 3.6328
3. 화성시 M 도로 448㎡ 중 B 지분 448분의 5.0859
4. 화성시 N 도로 1913㎡ 중 B 지분 1913분의 21.7179
5. 화성시 O 도로 1650㎡ 중 B 지분 1650분의 18.74
6. 화성시 P 도로 30㎡ 중 B 지분 30분의 0.3406
7. 화성시 Q 도로 60㎡ 중 B 지분 60분의 0.6811. 끝.

별지 4

제 4 장

1. 특허권

가. 등록번호: BA

나. 출원번호: BB

다. 발명의 명칭: BC

라. 등록권리자: D

2. 특허권

가. 등록번호: BD

나. 출원번호: BE

다. 발명의 명칭: BF

라. 등록권리자: D. 끝.

